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34
----------	------

2017년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10. 16.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7. 10. 24.
3. 상정일자 : 제277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2017년 11월 2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맞춤 제작·개조, 수리 및 사후관리, 홍보 등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활용 및 보급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임.
- 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다. 이에, 장애인이 많으면서도 보조기기센터가 없는 서북지역에 보조기기센터 설치를 통해 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2018. 3. 1. ~ 2020. 12. 31.
- 위탁사무 : 서북권 보조기기센터 관리 및 운영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보조기기관련 연구, 교육 등 광역보조기기센터 역할 수행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소요예산(안) : 398백만원(2018년)
 - 센터 인건비·운영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2017.9.2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및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서울시 서북지역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서비스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목적하는 활동 향상을 위한 공학적 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및 삶의 질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광역센터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지역센터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 제1항 제3호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 확보 협의 중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동의안의 취지

- 본 동의안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기기센터 접근성 및 이용수요 충족을 위하여 서북권역에 보조기기센터터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¹⁾에 따라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2 서북권 보조기기센터 신설 배경 및 필요성

- 서울시는 현재 3개의 보조기기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동남 보조기기센터	동북 보조기기센터	서남 보조기기센터
위탁법인	(재)영원한도움의성모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위치(면적)	강동구 고덕로 201 (313.2㎡)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299.2㎡)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253.3㎡)
지원인력	5명 (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5명 (보조공학사 4명 (작업치료사 1명))	5명 (보조공학사 3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위탁기간(회차)	'17.1.1. ~'19.12. 31 (4차)	'17.1.1. ~'19.12. 31 (2차)	'17.1.1. ~'19.12. 31 (2차)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각 센터별 8~9개 자치구를 서비스 권역으로 함



○ 3개 보조기기센터는 위치상 모두 서울 중심 지역에서 다소 멀리 위치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센터는 8~9개 자치구를 3개 서비스권역별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시 4개 권역별 장애인 인구 분포를 보면 현재 보조기기센터를 운영 중인 동남지역(16.3%)에 비해 서북지역의 장애인 인구가 더 많고, 서북지역(17.1%)의 장애인은 보조기기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됨.

〈서울시 권역별 장애인등록인구 현황〉

(2017년 7월말 기준, 단위: 명, %)

구분	계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장애인등록인구	391,549	67,035	123,205	63,903	137,406
비율	100%	17.1%	31.5%	16.3%	35.1%

- 2017년 1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조례’) 제5조는 광역 보조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²⁾는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에서는 장애인 이용자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4개 권역 중 보조기기센터가 없는 서북지역에 보조기기센터를 신규 설치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또한 보조기기 서비스는 상담·평가, 대여, 제작·개작 등 주로 이용자의 센터방문이 많은 서비스이므로 이용고객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센터의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임.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의 기본이념과 같이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최대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자아를 실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장애인의 특성 및 지역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에서 좀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보조기기센터가 필요하며, 권역별 배치를 통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한 센터의 추가 설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할 것임.

2)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지역센터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거나 능률성이 요청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³⁾ 및 서울시 장애인보조기기조례에서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 ④ (생략)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대여, 맞춤 제작 및 개조, 구입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그리고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홍보,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등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라 할 수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⁴⁾제1항제3호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전문적인 사회 복지서비스 및 보조공학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나. 민간위탁 방식의 적정성 검토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4)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생략)

- ①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②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 ③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④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⑤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⑥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⑦ 보조기기관련 연구, 교육 등 광역보조기기센터 역할 수행
 - ⑧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상기와 같이 보조기기센터 운영 사무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욕구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이용자 상담·평가·훈련·사후관리, 보조기기 맞춤 제작·개조·수리, 연구·교육 등 광역보조기기 센터 역할 수행 등을 하는 것으로,
- 그 특성상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조기기센터 운영을 직영방식과 비교할 때,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원 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임.
- 따라서 보조기기센터 운영은 해당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 및 전문적 서비스 기술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

- 서울시의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은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여야 하는데, 현재 본 동의안과 함께 서울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동 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임.
 - ‘서북권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신설 계획’이 2017년 9월에 마련되었으나, 2018년회계연도 서울시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센터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 본 동의안의 대상인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는 2018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34
----------	------

제출년월일 : 2017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보조기기 맞춤 제작·개조, 수리 및 사후관리, 홍보 등 장애인 대상 보조기기 활용 및 보급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 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해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다. 이에, 장애인이 많으면서도 센터가 없는 서북지역에 보조기기센터 설치를 통해 보조기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북권 보조기기센터」를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탁기간 : '18.3.1.~'20.12.31
- 위탁사무 : 「서북권 보조기기센터」 관리 및 운영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보조기기관련 연구, 교육 등 광역보조기기센터 역할 수행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 소요예산(안) : 398백만원(2018년)
 - 센터 인건비·운영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2017.9.20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필 요 성
 - 서울시 서북지역 등록 장애인의 보조기기서비스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목적하는 활동 향상을 위한 공학적 지원
 -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및 삶의 질 향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6조(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8조(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의 지원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관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하여 자금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역보조기기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6조(지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의 지역센터에 대한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권역별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나. 예산조치 : 민간위탁금(398백만원) 확보 협의 중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박진용(☎2133-7362)